

##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기간제근로자(연구원)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기간제근로자(연구원)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19일  
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

### □ 최종 합격자 명단

- 부여-05 이○○

### □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

1. 최종합격자는 채용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일시/장소 : 2024. 1. 2.(화) /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

나. 제출서류

-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 **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**  
(※ 붙임 1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,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)
- 기본증명서(상세)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- 일반 채용신체검사서(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로 대체 가능) 1부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(※붙임 1 서식 작성)
- 결격사유 확인서 1부 (※붙임 2 서식 작성)
- 통장사본 1부(급여지급용 계좌)
- 반명함 사진 1매(JPG)
- 기타서류(최종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)

## 2. 유의사항

- 가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채용담당자 (☎ 041-830-561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합격통보 후에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, 신체적·정신적 결함, 성범죄 관련 (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포함) 및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한 경우 및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.
- 다.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
- 붙임 1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
2. 결격사유 확인서 1부. 끝.



## 결격사유 확인서

- 성 명:
- 생년월일:

본인은 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
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확인자: (인)

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귀하